

2012 이룸기획포럼
새로고침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모관계,
해체는 불가능한가



일 시 | 2012년 7월 19일(목) 2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 최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2012 이룸기획포럼 새 로 고 침

■ 순 서

내 용

발제 표정선(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관계 변화에 대한 사례분석과 논의’

토론 1. 송태경(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

토론 2. 김주희(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질의 응답 및 토론

【발제】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관계 변화에 대한 사례분석과 논의

표정선(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목 록 》

I. 들어가며

II. 본론

1. 사채시장의 구조와 변화

2.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관계 변화와 대응체계의 한계

1) 성매매 여성, 채무관계의 다변화 -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 ① “필요한 데 써!” , 대출부터 해주는 유흥업소
- ② “급여=빚 갚는 돈” 이라는 공식
- ③ 성매매에 공모하는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 ④ “얼마든지, 계속 빌려줄게” , 반복대출과 수수료·이자 챙겨먹기
- ⑤ 사채, 법률위반·비상식·불균형의 계약
- ⑥ 성형대출, 방보증금 대출, 의류채권
- ⑦ “무조건 쪼아본다!” , 탈성매매를 가로막는 채권추심
- ⑧ 심각한 위계·위력관계
- ⑨ 탕치기에서 대출사기로
- ⑩ 연대보증, 동료와의 분쟁

2) 대응체계의 한계

3. 대응체계에 대한 다른 방식의 논의

- 1) 채권자 중심적인 불공정한 대부관행의 수정
- 2) 공공적 서민금융 정책의 필요
- 3) 성매매 여성들의 빛이 지속되는 구조의 해체

Ⅲ. 결론

I. 들어가며

최근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며 전면적인 불법사채시장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최초로 제공되는 선불금, 그 선불금을 시작으로 누적되는 빚, 그리고 업소에서 일하면서 수시로 이용하게 되는 일수와 같이 전통적인 사채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성매매 구조를 생각해 볼 때,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통해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불법대부업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규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성매매와 사채시장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선불금이라는 명목으로 최초로 형성되는 빚은 이전 업주가 아니라 사채업자에 의해 형성된 지 오래 되었고, 처음부터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업소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또 사금융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전부터 성매매 여성은 누구보다도 쉽게 ‘일수쟁이’, ‘사채업자’와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어 왔으며, 심지어 탈성매매 여성을 발목 잡는 것도 사채 빚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사채 빚은 성매매로 유입되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에 머물게 만들면서, 동시에 성매매 업소를 떠난 여성들을 붙잡는다.

그런데 선불금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전통적인 관계 방식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이 무효화 되는 법률¹⁾이 제정, 시행되고, 합법적 사채시장²⁾이 전보다 확장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 일수업자는 더 이상 유흥업소에만 매달리지 않고, 20-30대 여성들을 상대로 성형수술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방보증금을 대출해 주고 그 이자와 원금을 받아낼 때 유흥업소에 취업하도록 협박하는 일³⁾까지 벌인다. 또 성매매 업소 업주나 사채업자가 직접 성매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제 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정부는 1997년 IMF 이후 규제완화를 이유로 이자제한을 없애고, ‘시장의 자유’를 근거로 대부업 양성화론을 주장하면서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른다. 대부업법 제정 이후 누구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대부업자로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었고, 10년이 지난 현재 대부업은 등록, 무등록 합쳐 4~5만개의 사채업체로 그 수가 무려 10배나 증가하였다(송태경, 2011). 외양은 합법화 되었지만 이들 대부업체는 많은 경우 영업과정에서 불법, 탈법적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채무피해자, 금융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고리대출 ‘덧’ 놓는 성형외과-사금융업체 연계 성형 권유…브로커 ‘온라인 알선’ 활개”, 문화일보 사회, 2008.1.24일자

를 그만둔 여성들을 찾아가서 “빛 값으라” 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신용정보회사들에 채권을 팔아넘기고, 신용정보회사의 이름으로, 매우 합법적으로 보이는 경로로 채권추심을 진행한다. 최근 법망을 피해가려는,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이러한 변화된 관계는 ‘합법’ 이라는 허울을 쓰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여성의 삶을 파고들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이 맺은 채권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성매매방지법 상의 ‘채권무효’ 규정이 점점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빛 문제’ 때문에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채시장이 이전보다 확장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해진 방식으로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하는지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최근 변화되고 있는 사채시장과 성매매와의 관계를 짚어보고,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모관계를 해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도 함께 던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성매매방지법에서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 규정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빛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보다 다른 시각에서, 일반화 된 사채시장 구조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본질적으로 사채시장이 성매매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복잡다단한 성매매 현실을 이해하고 그 현실에서 보여지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자체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매매 현실을 둘러싼 주변부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체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4년, 2005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시행으로 성매매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에, 직접적인 성매매 단속보다 기업들의 접대비에 상한선을 두어 성구매를 권장하는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제한하고자 했던 정책이 더 중요하게 판단되었던 이유도 그렇다. 성매매 여성들의 ‘빛 문제’ 도 마찬가지이다. ‘빛 문제’ 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문제로 치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채시장은 ‘합법’ 이라는 날개를 달고 여성들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성매매로 유입되거나 강제되며, 끊기 어려운 사채의 고리를 혼자 끌어안고서 죽음과 직면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무분별하게 확장된 사채시장에 대한 규제 없이는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II. 본론

1. 사채시장의 구조와 변화⁴⁾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성매매 여성들이 사채업자를 접할 수 있는 경로는 업주를 통해서였던 것 같다. 굳이 사채업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업주는 선불금을 통해 여성을 성매매 산업에 묶어둘 수 있었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했던 직업소개소의 경우에도 잦은 빈도로 여성을 업소에 넘기고 소개비만 챙겼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에 의뢰되는 성매매 여성들의 빚 문제에 사채업자 또는 일수업자가 더 자주 등장하고, 그 중에서 ‘합법적’ 대부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대출회사 또는 채권추심업체들이 끼어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합법적’ 사채업자가 난립하게 되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사채 문제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사채업자가 거리낌 없이 활보하게 된 데에는 사채업을 ‘대부업’ 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고 규제에 소홀했던 한국의 정책 변화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대출천국의 비밀』의 저자 송태경은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1998년 정부가 IMF 자금자원을 받게 되면서, IMF 고금리 정책요구에 따라,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했던 것이 그 시작이다. 고리대금이 자유화되고,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곧 채무불이행자의 양산을 낳았다. 이자제한법 폐지로 사채시장 금리가 폭등하고 각종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한국에서 시장을 열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으며 급기야 정부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을 통해 연 66% 이자율을 제한했지만, 대신 사채업에 ‘합법’ 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 최대 3000개였던 사채업체 수는 등록, 무등록을 합쳐 4-5만개로 폭증했다.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 어음할인, 선불금 채무시장에서 영업을 이어가던 사채업은 그 후 모든 국민에게 “돈을 빌리라” 고 광고하고 있다. 손 쓸 수 없이 커져버린 대부업 시장에 정부의 관리, 감독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이자제한법은 2011년 연 39%까지 인하되었지만, 그 초차도 사채업자와 대부업 관련기관의 고이율 수익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대부업의 팽창은

4) 송태경, 2011, 『대출천국의 비밀』, 개마고원.

온갖 “00캐피탈” 과 같은 대출회사의 난립과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권에서의 고금리대출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위의 내용은 송태경, 『대출천국의 비밀』 중 한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사채시장이 합법화되어서가 아니라, 합법화와 더불어 무분별한 대출관행이 대중화되어 사채시장이 별 규제 없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또 채무자의 돈을 갚을 능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을 제공하고 이자와 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각종 불법, 탈법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데 있다. 그리고 사채시장이 합법화, 팽창하면서 이에 노출된 성매매 여성들이 계속되는 부채 상황에 놓여질 위험이 더 커졌으며, 거기에서 빚 문제를 해결할, 일종의 탈출구는 매우 좁아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시장의 자유화’ 라는 명목으로 고리대금업을 방치만 하고 관리, 감독에 소극적이었던 한국 상황에서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합법적’ 사채시장은 무일푼의 여성에게 빚 변제능력을 보지 않고 거액의 비용을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에 머무르게 한다. 특히 많은 현금이 오가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로부터 매일 조금씩 이자를 받아내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은 어쩌면 사채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먹잇감’ 일지도 모른다. 사채업자가 굳이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말이다. 이들 사채업자들은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 머무르는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어 각종 수수료 이득을 챙기거나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여성을 상대로 ‘그럴듯한’ 계산방식으로 이자율을 책정하여 수익을 낸다. 이때 사채업자들이 수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오로지 ‘성매매를 통한 소득능력’ 뿐이다. 이는 “약탈적 대출행위” 의 전형이다. 홍종학(2005)은 약탈성의 정도나 새로운 종류의 약탈적 대출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약탈적 대출’ 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의미한다고 본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탈적 대출행위⁵⁾” 의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유주선(2011), 「약탈적 대출행위, 이른바 유럽에서 ‘책임대출과 책임차입’-유럽연합의 논의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Vol 36. No 0. p.647-679.

-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하는 경우
- 차입자가 반복적으로 차환대출을 받게 하여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전문적 지식이 없는 차입자를 기만하여 해당 대출상품의 진정한 성격을 숨기고 파는 행위
- 차입자에게 유해한 대출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및 기타 유해한 대출관행

이처럼 사채시장의 합법화, 그리고 대부업의 팽창, 난립, 그로 인한 악탈적 대출행위의 대중화라는 배경 속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착취 고리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채시장의 변화는 성매매 여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채로 인한 착취를 비가시화하고 ‘빚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만 다루면서 사회적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빚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채시장의 구조와 변화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 배경을 이해해야 성매매 여성들의 채권채무관계의 다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고 보다 다른 방식의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합법적 사채시장과 악탈적 대출행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사채시장이 성매매 여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착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관계 변화와 대응체계의 한계

1) 성매매 여성, 채무관계의 다변화 - 상담 사례⁶⁾를 중심으로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사채시장에 대한 구조적, 정책적 변화는 성매매 여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성매매 구조의 행위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성매매 여성, 성구매자, 업주 또는 소개소 사장의 삼각구조가 두드러져 보였지만, 현재는 여기에 일수업자 또는 사채업자, 신용정보회사, 캐피탈, 심지어 저축은행까지 성매매 구조의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 것 같다. 과거에는 업주가 선불금을 제공하고 그 돈을 빌미로 계속 성매매를 강요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업주는 금전거래에서 아예 빠져 있고, 일수업자와 성매매

6) 사례로 소개되는 내용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에 의뢰된 상담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문의 형식의 상담, 지속적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상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성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출행위와 관련된 정보만 최대한 축약하여 정리했다.

여성이 1:1 관계를 맺는다. 여성이 먼저 대출광고를 보고 돈을 빌리고, 그것을 갚지 못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상황도 벌어진다. 결국 합법화된 사채시장이 성매매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꼴이며, 업주를 대체하는 거대한 포주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에 의뢰되는 상담 중에는 더 이상 업주를 고소하거나 신고하겠다는 여성은 거의 없다. 여성의 법률지원 과정에서 분쟁의 상대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성매매 업소의 업주가 아니라 매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채업자이거나 선불금 채권을 양도받은 신용정보회사들이다. 아니면 두손 두발 다들고 파산으로 투항하는 방법밖엔 없다.

두 번째 변화는 사채업자들이 어느 조건 하나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빚의 규모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이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정보와 지원이 취약한 여성의 현실에서, 눈덩이처럼 쌓인 빚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성매매를 감행하기도 한다.

아래의 열한 가지 유형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2년간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에 의뢰된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엮어본 것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채권 채무관계가 다변화되면서 어떤 다양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채시장의 팽창 덕분에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는 이제 사채, 금융, 채권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성매매 관련 상담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① “필요한 데 써!”, 대출부터 해주는 유흥업소

〈사례1〉 여성 A는 룸살롱에서 일하면서 800만원의 빚이 남아 있었음.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룸살롱 마담이 A에게 남은 빚 800만원 외에 2,000만원을 더 줄 테니 성형비나 월세방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속한 업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함.

〈사례2〉 업주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주고, 고용된 여성의 명의로 상호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함.

〈사례3〉 사채업자가 업소로 찾아와 선불금을 제공. 처음 계약 시, 2000만원이 필요한 여성에게 2400만원 차용증 서류에 사인하게 하고, 각종 수수료와 선이자를 떼고 원금은 1820만원만 지급함. 사채업자의 설명에 따르면, 서류비가 3%, 일수 24만원씩 5일치를 선일수로 120만원 빼고, 2400만원에 대한 이자를 400만원을 미리 뺀다고 설명.

유흥업소는 이제 여성이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금전대여부터 해준다. 전통적인 방식의 선불금은 업주가 전 업소에서 남게 된 빚을 갚아주는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1-2개월치의 급여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는 정도가 다였다. 그러나 위의 <사례1> 과 같이 마담이 먼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비용 2천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여성에게 제안하거나 <사례2> 와 <사례3> 에서 보듯이 선불금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리는 대여금과 사채업자의 대여금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여기에 업주는 등장하지 않는다. 업주는 여성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만 안내할 뿐이다. 과거 전통적 방식에서는,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졌을 경우, 업주가 여성에게 제공한 모든 선불금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제 업주는 자신이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저 앉아서 여성의 일만 관리, 감독하면 되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더구나 과거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에게 묶여 있는 선불금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업소의 불법성매매를 신고하고자 했지만, 이젠 빚이 업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업주를 신고할 동기마저 잃어버렸다.

다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어떤 형태의 선불금이든 선불금 제공은 “오로지 성매매를 통한 소득능력” 을 보고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례1> 에서 마담이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 사채업자가 빚 변제능력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무작위로 돈을 빌려주는 것 모두 여성의 성매매를 통한 “견적” 을 그들 나름대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가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여성에게 적지 않은 금액인 11,000,000만원을 연간 이자율 66%⁷⁾로 변제기한을 불과 3개월로 하여 빌려주었다고 치자. 이때 여성이 3개월 뒤 갚아야 할 돈을 무려 12,815,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3개월 동안 이 돈을 갚기 위해 여성이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사채업자는 무엇을 보고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 사채업자는 ‘합법적 테두리’ 에서 고스란히 성매매를 통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의 무분별한 대출관행을 문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② “급여=빚 갚는 돈” 이라는 공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근로계약서⁸⁾에 제 4조 업주의 의무에는 종업원에게

7) 연이자율 66%로 제한되었던 과거의 사례이다.

8)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근로계약서’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탈성매매한 여성의 소송자료를

“직책에 따른 보수(급여, 봉사료, 판매수당 등)를 지급하고, 기타복지사항이 있을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에서는 여성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성구매자 수에 따라 또는 룸서비스를 하는 횟수, 즉 ‘테이블 수’에 따라 봉사료가 책정되며, 그날그날 현금을 받거나 선불금 채무기록에서 채무금액이 소멸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 또는 일수업자에게 빚이 있는 경우, 급여 혹은 봉사료 명목의 현금은 여성의 손을 아예 거치지도 않고 일수업자가 업주를 통해 직접 건네진다. 그래서 룸살롱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 한 테이블에 9만원, 2차를 나가면 25만원을 받았지만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없었다. 마담을 통해 일수업자에게 돈이 보내졌고, 남은 돈 가운데 일부만 다음날 받을 수 있다. 그 일부 돈으로 교통비에 식대, 옷렌탈비 모두를 감당해야 한다” 와 같은 진술이 흔하게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빚을 떠안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급여 전체가 빚 갚는 돈으로 우선 지출되면서 여성들의 생활은 오히려 더 궁핍해져 추가적인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그러나 이렇게 월 급여를 선불금 채무를 갚는 것으로 충당하게 하고 전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유흥업소에서 여성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업주의 지휘, 감독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에는 선불금과 급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불금 채권으로 임금과 상계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선불금)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동법 제 115호), 업주가 선불금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이 된다.

〈막달레나의집 2004, 『성매매 관련 법률안내서』 p.51〉

그러나 이 법률조항이 유흥업소 내에서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어떤 이유에서든 빚을 떠안고 살아가더라도 생계·생활비는 보장되어야 한다. 상식적인 선에서, 채무가 많은 사람의 급여 압류에 있어서 범위를 정해놓는 이유도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은 급여의 절반 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급여의 25% 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가능하다. 그마저도 임금에 대한 압류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주도

통해 수집되었다.

있다. 즉 채무자들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가 전제되어 있다⁹⁾. 유흥업소에서 “급여=빚 갚는 돈”이라는 비상식적 관행이 깨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급여가 채무변제로 충당되면 여성들은 반복대출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이자지출과 빚 돌려막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이 악순환은 성매매 여성들의 안정적 삶을 방해하면서 계속 성매매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③ 성매매에 공모하는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사례4〉 보도방에서 소개해 준 00캐피탈에서 1800만원의 선불금을 지급.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제하고 실질대출금은 1200만원. 월 5부이자 조건. 일하는 동안 실질 채무가 1800만원으로 늘어남.

〈사례5〉 “지금은 소개소보다 일수하는 사람들이 업소들을 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너 일루 가, 일루 가...(옛날에 소개소 사장이 하던 역할?) 네, 그거예요. 거의 예. 돈 빌려주고 일수이자 받으면서 만약 이 아가씨가 돈을 못 벌면은 ‘이쪽으로 가, 여기 가서 일을 해!’ (일수업자한테 소속이 된 거네요?) 거의 그러죠...일수하는 사람들이 업소를 많이 아니까 어디 인제 좋은 업소 있냐. 많이 버는 업소 있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여기여기 관촬으니까...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일수업자)이 말하는 걸 들어줘야 되니까”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해 여성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따라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은 무효이지만, 성매매 여성에게 또는 성매매 여성이 아닌 누구라도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성매매에 기생하는 대부업체는 이 점을 이용한다. 더구나 대부업 합법화로 인해 ‘00캐피탈’과 같은 대부업체로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사례4〉처럼 보도방 소개로 여성에게 대출을 해줬다 하더라도, 여성이 보도방 사장과 대부업자와의 관계성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성매매와 전혀 상관없는 척”만 하면 불법 영역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때문에 〈사례5〉와 같이 일수업자는 합법적으로 ‘대부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5〉는 예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나

9) 홍종학, 2005, 「약탈적 대출에 관한 소고」, 한국경제학보 제12권 제1호, p.255-257

직업소개소에 소속되어 업소를 옮겨 다녔지만, 지금 여성들은 일수업자에 소속되어 업소를 옮겨 다니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돈을 갚으라”는 빚독촉이 암묵적으로 성매매 알선으로 확장되고 있는 꼴이다.

〈사례6〉 업주가 성매매 여성의 명의로 상호저축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함. 여성은 5년 후 채권추심이 들어와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을 찾아간 적도 없다고 함. 업주와 상호저축은행 간의 어떤 공모가 있는 것인가?

〈사례7〉 한 여성이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3000만원 받고 2개월 일함. 업주가 1000만원, 사채업자가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유흥업소를 그만둔 후, 사채업자와 업주의 채권을 상호저축은행이 양도받아 여성에게 압류와 변제요청이 통보됨.

성매매 여성의 채권채무관련 계약에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도 공모하고 있는 양상도 눈에 띈다. 〈사례6〉 처럼 업주가 성매매 여성의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한 조건이라든가, 〈사례7〉 처럼 불법인지 합법인지 검증되지도 않은 아무 채권이나 사들여 여성에게 빚독촉을 하는 사례가 그렇다.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송태경(2011)은 상호저축은행을 사실상 대부업자로 변신한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중에는 아예 대놓고 법령 이자율을 위반하여 일수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이 살인적인 고이자율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빚 독촉 수법도 편법,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이면서도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 시장에서 대부업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고, 대부업 양성화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또 누구보다도 긴밀하게 대부업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상호저축은행에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계약이라 여겨 이를 채권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이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계약을 할 때, 이것

10) 1.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채권의 보증채무를 무효로 인정한 사례

: 신용협동조합이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는 여성들이 업주 등에게 고용되어 윤락행위를 하게 되는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는데 조력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인정하여 위 대출금 채권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7251판결]

2.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무효로 인정한 사례

: 상호저축은행이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고, 소득증빙자료 및 신용조회 없이 성

이 성매매 업소의 경제적 기반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결한 것으로 다양한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호저축은행과 성매매 업소 업주의 공모관계를 몇 년이 지나서 여성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니 말이다. 단편적으로 성매매방지법 상의 채권 무효 조항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성매매라는 구조적 현상에 경제적 조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들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사후적으로 ‘채권무효’ 소송으로만 맞설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탈법적 수단으로 대출행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불법채권추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제로 초점이 옮겨져야 할 것이다.

④ “얼마든지, 계속 빌려줄게”, 반복대출과 수수료·이자 챙겨먹기

성매매집결지에서 일수업자는 자원이 없는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보다 더 긴요한 존재가 된다. 종종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일수업자를 “내가 어려울 때 돈 빌려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일수업자가 무등록 업자여도, 살인적인 고리 대출이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집결지뿐만 아니라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선불금으로 시작된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 하다가 반복적으로 대출을 하게 되거나 임시방편으로 ‘빚 돌려막기’, 즉 다른 곳의 사채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적 대출과 빚 돌려막기는 채무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들 뿐이다. 최근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여성들의 파산지원을 하다보면 20대 중후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 최고 30여개 정도로 많은 대부업체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부업체도 있지만, ‘러시앤캐시’, ‘산와머니’와 같이 무분별한 광고로 유명한 대부업체도 끼어 있다. 이는 여성들의 ‘빚 돌려막기’가 매우 일상화되어 있으며, 대부업체들의 무조건적인 대출행위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일수업자 또는 대부업자는 성매매 업소에 머무는 여성에게 계속해서

매매 여성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직원이 여성들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정도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고, 위 대출금이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주는 선불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대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계약이라 여성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2.2 선고 2008나9633판결]

자료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1), 『성매매피해 통합지원 매뉴얼』, p.234-237

서 돈을 빌려주고 각종 수수료와 이자를 챙긴다. 당장 한푼이 아쉬운 여성은 일수업자나 대부업자에게 얼마나 많은 이자와 수수료를 뜯기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대출과 빚 돌려막기를 일상화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들 대부업체들은 수수료나 이자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복대출을 할 뿐이지, 여성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⑤ 사채, 법률위반·비상식·불균형의 계약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은 연이율 30%, 등록 대부업은 연이율 39%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불법 사채업자들의 ‘연3476% 살인적 이자¹¹⁾’, ‘이자 5214%의 비밀¹²⁾’ 등과 같은 수식어를 접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평균 이자율은 연 200%에 달한다¹³⁾고 한다. 이처럼 이자제한법 같은 법을 간단히 무시하는 이들만의 연이율 적용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성매매 여성들의 상담사례에서도 “1100만원을 빌리고 월이자만 121만원을 물리게 한다”거나 “일수업자에게서 원금 330만원을 빌리고 1주에 50만원씩 갚도록”, 또는 “한달에 월이자와 일수로만 321만원을 갚게 되는 상황”과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빚 변제금이 책정되고 있다. 또 성매매집결지에서 일상적으로 일수업자와 대부계약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린 후, 하루에 1만원씩 120일간 총 120만원을 갚는 것을 연이율 20%로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나 이 일수대출에서의 연이율을 제대로 계산하면 연 113.7%에 해당된다. 이렇듯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이자제한법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인 연이자율 계산방식에 대한 정보도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출계약시 수수료와 선이자는 실질대출금(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식이나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보증인 보호법’에 대한 내용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채무자로서 성매매 여성들의 신상만 가득 적혀 있고, 동등한 계약자로서의 채권자 신상은 전혀 적혀 있지 않은 소위 “백지 차용증”이 난무한다. 다시 대출계약을 할 때 이전의 차용증은 소멸되어야 하는데 “그냥 서류만 쓰면 된다”는 사채업자의 말에 속아, 나중에 확인해 보면 같

11) “사채 뒤편에 걸린 딸 술집 나가자... 아버지, 딸 살해후 자살”, 조선일보, 2012.4.18

12) “이자 5214%의 비밀... 인천에서도 불법 대부업자 활개”, 헤럴드경제, 2012.4.27

13) “사채 뒤편에 걸린 딸 술집 나가자... 아버지, 딸 살해후 자살”, 조선일보, 2012.4.18

은 금액의 차용증만 몇 개나 발견된다. 또 대부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계약 당사자 양쪽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채업자가 모든 서류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매매 구조에서 사채계약은 이처럼 채무자인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또 얼마를 갚았는지, 초과 지급된 이자는 얼마인지 알아채지 못하도록, 또는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법률위반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규칙만 난무하고 있다.

사채업자들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위력 행사뿐만 아니라 불법 지대에서 행해지는 거래라는 점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 대출거래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인지하고 사채업자와 수평적 계약관계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매매 여성들이 사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인지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시스템도 있어본 적이 없다. 어쩌면 그래서 더 사채업자들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 거래가 횡행할 수 있고, 성매매 여성과 사채업자의 불균형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견고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채권 무효 소송을 하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것 외에, 성매매 구조에서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룰(rule)’을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룰(rule)’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빚을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매매 여성들이 높은 이자와 사채업자들의 횡포로 인해 더 착취적인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⑥ 성형대출, 방보중금 대출, 의류채권

성매매 여성과 사채업자는 이제 1:1 관계가 되었다. 성매매 업소의 업주는 이제 이 관계에 굳이 끼어들 필요가 없게 되었다. 대부업이 ‘합법’의 탈을 쓰고 횡행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이지만 다양한 대출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이 이러한 대출상품에 노출될 위험은 더욱 커졌다. 성형수술을 위해 여성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소위 “성형대출”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성형외과가 사채업자와 손을 잡고 여성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성형외과를 찾았던 여성이 대출을 권유받고 사채를 썼다가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유홍업소에 취업하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 ‘미용실 주인의 성형 수술권유로 사채 빚을 떠안았는데, 정작 미용실 주인은 알선 대가로 수술비의 15%를 착복했다’는 보도¹⁴⁾가 대표적인 예

이다. 성매매와 성형산업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은 늘 외모에 대한 긴장감으로 성형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성형대출이 누구를 타깃으로 하겠는가에 대한 답은 자명해 보인다.

방보증금 대출도 흔하다. 특히 이는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선불금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사채업자들은 여성들에게 월세방 보증금 비용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가지고 있으면서 빚독촉을 한다. 이는 여성이 유흥업소를 그만두고자 할 때에도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자의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방보증금을 대출해 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유흥업소에 취업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지만, 유흥업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성매매를 그만둔 여성이 필수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빚’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상담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채권 중에 하나는 바로 의류채권이다.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옷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한 외상값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채권’의 형태로 계속 양도되어 급기야 ‘성매매 경험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는’ 여성에게 청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쏘리퀸’이라는 의류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외상으로 옷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외상값을 받아내기 위하여 ‘채권관리부’라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을 정도다. 결국 걸은 의류업체이지만 채권추심, 채권양도 등과 같이 버젓이 대부업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업체나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외상값 명목이어서 채권 무효 소송도 어렵다.

위의 세 가지 성형대출, 방보증금 대출, 그리고 과거의 의류채권까지, 이는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채시장의 틈새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양하고도 교묘한 방식으로 여성들의 생활을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⑦ “무조건 쫓아본다!” 탈성매매를 가로막는 채권추심

사채업자들의 불법채권추심 행위, 즉 협박, 위협, 가족을 찾아가기, 성매매 사실을 알리기,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기, 여성에게 시간에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기 등과 같은 행위는 너무 흔하고 반복적으로 얘기되다보니 이 지면

14) 고리대출 ‘덧’ 놓는 성형외과- 사금융업체 연계 성형 권유.... 브로커 ‘온라인 알선’ 활개, 문화일보 사회면, 2008.1.24
예뻐지고 싶은 욕망노린 성형수술 불법사채 등장, 경인방송, 2012.4.26

을 빌어 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새롭게 주목할 것은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가로막는 채권추심이 더 이상 ‘불법’ 적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 8〉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수년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 이 통보된 사례. 심지어 차용증에 날인된 채권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변제 내역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태.

〈사례 9〉 여성이 일하면서 얼마를 갚았는지, 또 정확하게 얼마를 빌렸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이 찾아와서 무조건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 여성과 채권자, 둘의 채무내역이 불일치하고 확인조차 어려운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차용증을 쓸 때, 많은 경우 채무자 내역에 자신의 이름을 날인할 뿐 채권자의 이름이나 신상을 확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차용증에는 채무자 이름만 있고, 채권자 날인은 비어있다. 이를 ‘백지차용증’ 이라고 한다. 또 본래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 모두 계약서 1부씩을 보관해야 하지만 여성들은 차용증을 보관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대부분 업주나 사채업자와의 위력관계에서 차용증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들은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몇 년이 지나서 빚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걸기도 한다. 현금거래가 많고, 여성들의 경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 에 대한 증거를 되도록 남겨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과 사채업자와의 수년간의 관계에서 남는 것은 차용증 서류 하나 뿐이다. 이처럼 애초에 계약관계 자체가 불분명하고 빚 변제내역이나 거래현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 차용증을 ‘지급명령’ 의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점을 악용하여 업주나 사채업자와 같은 채권자들은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청구하거나 일반채권 형태로 팔아서 이득을 챙기기도 한다.

더구나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들이 유흥업소에서 나온 채권을 무조건 사들이고 있고, 이것이 불법채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해당 여성에게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 채무자인 여성 당사자에게 고지되지도 않는 무분별한 채권양도, 그리고 신용정보회사들의 일단 추심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이미 사채업자들과 신용정보회사들의 공모를 의심케 한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접수되는 “00몬 신용회사, 00신용정보, 00자산관리, 000캐피탈, 0000대부” 등과 같은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는 그 규모와 내용을 이미 파악하기 어

려울 정도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래 사례처럼, 이미 탈성매매한 지 수년이 지난 여성들에 대한 채권추심이다. 수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계약내용과 거래내역을 입증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사례 10〉처럼 업주와의 계약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불법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채권추심회사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사례 11〉과 같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변제독촉이 들어와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또 결혼한 상태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올 때는, 가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여성들은 되도록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갚지 않아도 될 돈을 갚게 되거나 쉽게 채권추심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에 이르기도 한다.

〈사례 10〉 10년 전 티켓다방에서 일할 때 750만원 선불금 받고 차용증을 썼음. 결혼 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무독촉 들어옴.

〈사례 11〉 10년 전 유흥업소 선불금 빚이 900만원 남은 상태에서 업소를 그만둠. 당시 연대보증인들이 돈을 갚고서 자신들이 대신 변제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함. 법적으로는 불법원인채무이지만,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함.

〈사례 12〉 8년 전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빚이 있었는데, 업소를 그만두고 결혼을 한 이후에 사채업자가 찾아와 ‘남편월급 차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감.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들과 사채업자들은 여성들이 잘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다. 그래서인지 단 1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추심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불법채권임을 주장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권추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들이 채권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채권추심은 “일단 쫓아보고, 안되면 말고”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⑧ 심각한 위계·위력관계

앞서 〈사례 5〉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이제는 사채업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많은 경우 성매매 여성과 사채업자는 위계·위력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달리 사채업자를 견제할 장치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방직법이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한 법률이기도 하지만, 때론 역설적으로 업주와 성구매자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채업자를 견제해 주지는 못한다.

〈사례 13〉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 한 삼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 일수 때문에 그 일수쟁이들이 자기 사무실에다가 가둬놓고 때리고 그거를 봤거든요. 그거를. 이틀인가 삼일인가 가둬놓고 이제 차용증 또 쓰게 하고 그때 뭐.. (중략..)(친구가) 연락이 안 되가지고 왜 연락이 안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방금 얘기했던 거. (최근에도 그런 일을 일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중략..) 일수쟁이들은 빚 —아까씨들하고 관계하는 거. “야! 너 뭐 이러니까 (빚도 안 갚고 있으니까) 나랑 한번 재!”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중략..) 일수를 갚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면서 손님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이제 또 일수쟁이들은 또 날짜 하루라도 어기면 바로바로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닥달복달... 좀 심한 사람은 욕설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중략..) 근데 거의 일수쟁이들이 그쪽(강남)에 있잖아요. 거의 그렇고 나 또 돈 안 갚으면 니네집 부모한테 쫓아가가지고 다 알리겠다. 뭐 동네에 사진 다 뿌리겠다. 일하는 거 뭐 해가지고 다 뿌리겠다. 그런 거는 진짜 많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협박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가씨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30대 여성 인터뷰 중에서)

〈사례 13〉의 증언은 성매매 여성과 사채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폭력과 감금과 같은 불법행위 외에도 빚 갚는 날짜를 연기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한다. 이를 법에 호소하더라도 사채업자와 성매매 알선 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채업자와 맺은 채무계약이 무효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들은 그저 “돈을 빌려주었고, 갚으라고 요구한 것 뿐” 이라고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사채업, 즉 대부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칙과 규제,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구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채업자들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한편, 대부업이 합법화되면서 채무자인 성매매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틀도

갖추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등록대부업을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채무자인 여성들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원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정당한 채권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대부계약 서류만 있으면 등록 대부업체의 재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수년이 지난 후 채무자인 여성은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삭제하기 위해 다시 그 사채업자를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물론 이때의 채권 또한 ‘다 갚은 채권’ 이거나 ‘기억나지 않는 채권’ 인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이런 채권자 중심의 금융구조가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하는 사채업자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다.

㉑ 탕치기에서 대출사기로

탕치기는 “소개업자나 사채업자가 여성들을 여러 업소로 옮기게 하면서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이 영업준비금 또는 이전 업소의 채무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도주하게 하는 범죄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¹⁵⁾” 를 말한다. 즉 소개업자가 성매매 업소를 옮기도록 유도하면서 중간에 선불금을 갈취하는 형태인데, 중국에는 여성이 취업사기범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탕치기 공모에 이용당했던 여성들은 이제 대출을 빙자한 각종 사기에 동원되거나 아니면 사기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여성들은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해 주거나 통장 개설을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의도치 않게 사기 공모자가 되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고, 직장인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 의 공모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죄가 급증한 것 또한 대부업 합법화, 양성화의 뚜렷한 결과 중 하나이다(송태경, 2011).

㉒ 연대보증, 동료와의 분쟁

위의 <사례 11> 과 같이 성매매 여성들은 동료들간의 연대보증 관련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채업자들은 여성들의 빚 상환능력이나 신용정보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대신 동료 여성들이 서로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데, 이 또한 각각의 여성들의 ‘성매매를 통한 소득능력’ 만을 담보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매매 여성들끼리 보증관계로 묶여 있을 경우,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막달레나의 집(2004),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p.350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 보증을 서 준 다른 여성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게 된다. 또 <사례 11> 과 같이 사채업자나 업주가 원 채무자를 찾지 못해 보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 채권의 불법성 또는 채권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나중에 보증인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또 사채업자나 업주가 이런 상황을 악용할 소지도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동료간의 분쟁에서 정작 문제가 되어야 할 지점은 그런 환경을 너무나 쉽게 조성하고 있는 사채업 관행에 대한 문제인지도 모른다. “쉽게” 돈을 빌려주고 “아무나” 보증을 서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채, 대부업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찾기 어렵고, 채무자에 대한 책임만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대응체계의 한계

이미 정책적으로도 성매매방지법 상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 무효 조항을 통해 기존의 선불금 형태의 채무를 해체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의 무효성’ 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성매매와 선불금의 긴밀한 관계성과 그로 인한 문제들을 파격적으로 수용한 조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채권무효 조항은 현재 성매매피해여성들의 법률적 지원에 있어서 핵심적 방패막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사채업자뿐만 아니라 신탁, 수협 등과의 선불금 거래로 인한 분쟁에서도 성매매 여성의 취약성을 인정하면서 ‘채권무효’ 를 선언한 의미 있는 판결(위 각주9) 참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성매매 업소에서의 선불금 채권의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불법채권” 임을 주장하여 개별적 사건에 대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선불금 채권을 양도 받은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체가 몇 년이 지나 전직 성매매 여성에게 채권추심을 하게 되었을 때, 상담소가 개입해 이 채권이 ‘불법채권’ 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그들이 채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사채시장에서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많은 경우 여성들은 이러한 법적 정보에 전혀 접근할 수 없거나 대응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때로는 성매매 경험을 드러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하며, 결국엔 불법 채권임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그렇다면 사채시장 관리, 감독에 있어서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채권을 가려내고 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을 중단하라’ 는 대대적인 요구를 해야 할 필요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적 대응사례 중에는, 립살롱에서 일하면서 사채 빚을 갚아왔던 한 여성이, 돈을 다 갚았는데도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채업자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해 형사적 구제를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이 사례는 대부업과 관련한 법률 정보, 사채 빚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책에 대한 정보만이라도 유흥업소 내에서 유통될 수 있다면, 적어도 여성 스스로 사채업자를 견제할 수단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대응체계는 사후적으로만 구성될 뿐만 아니라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채시장의 팽창 속에서 다변화 된 채권채무관계의 현실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성매매 여성들이 사채업자들과 매우 불균형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또한 ‘빚 문제’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매매 사실이 밝혀질 위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채권채무 관계만으로도 수평적 관계를 상상하기 어려운데,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사채업자들의 암묵적인 협박까지 덧붙여져 그 위력관계는 더 견고해지지만 한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개별적 대응체계는 성매매 여성들과 사채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보면 매우 협소한 틀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성매매 여성과 사채업자간의 위력관계와 여성의 취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논의의 방향은 사채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로 옮겨 가야 할지도 모른다.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왜 갚지 못할 돈을 빌리고 있는가”라고 책망하기 전에, “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전환으로 유흥업소에 기생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고, 어떤 탈법,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감시가 필요하다. 대부 계약이행시 불공정한 관행과 무분별한 대부업체 광고를 규제하는 것, 각종 채권추심회사들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근절, 특히 ‘전직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조정하고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의 확대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취약한 현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채시장에 대한 문제제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대응체계에 대한 다른 방식의 논의

1) 채권자 중심적인 불공정한 대부관행의 수정

사채업자들이 성매매 여성들만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성매매 여성들이 관계

맺는 사채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출과 관련한 한국적 상황을 보다 큰 틀에서 사고해 봐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채시장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종 수수료나 이자를 부과하면서 자신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채무자인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관행을 일삼고 있다. 이는 이미 앞에서 한국의 사채시장 자체가 약탈적 대출행위를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성매매 여성들의 상담사례에서 본 것처럼, 한마디로 일방적인 채권자 중심의 마인드가 이러한 불공정한 대부관행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홍중학(2005)은 한국에서 약탈적 대출행위가 만연한 것에 대해 금융이용자 보호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 규제완화, 이자제한법상의 금리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이용자보호는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소비자의 권리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인데,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허점을 이용한 약탈적 대출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홍중학(2005)이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이용자보호제도를 살펴보면, 채권자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 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방어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은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거부의사를 밝힌 후에는 오직 법원을 통해서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 손쉽게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를 통해 회생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중 25%이하(다수의 주에서는 15%이하)만 압류를 허용한다.
-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규제한다.

〈홍중학, 2005, 「약탈적 대출에 관한 소고」, p.245〉

반면 한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채시장에서 누가 더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채권추심을 통해 채무자를 착취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어 왔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정부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뒤늦게 이자제한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왔고, 최근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선언한 상태이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폭증한 사채업체를 규제, 감독하는 데 있어서는 한참 역부족이다. 또 불법채권추심 금지와 채

권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한 법률조항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연이율제한 조차 간단하게 무시하는 사채업체가 만연한 현실에서, 채무자의 권리가 강력하게 주장되기 어렵다. 채무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책도 협소하다. 특히 채무를 조정하는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를 쉽게 이용하기도 어렵다. 특히 최근 법무부는 ‘파산관재인선임제도¹⁶⁾’를 의무화 해 면책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오히려 파산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미국의 금융이용자보호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채권자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수정되지 않으면, 사채시장에서 어쩌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착취도 없애기 힘들다. 사채 빚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사채 빚을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까지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인 사채계약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사채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엄격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공공적 서민금융 정책의 필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안적인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요구는 이전부터 늘 있어 왔고, 또 ‘사회연대은행’과 같이 다른 방식의 대안적 시도도 있어 왔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무이자로 또는 저리의 대출상품을 공급할 공공적 서민금융의 폭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자원도 없어 성매매에 유입되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어떤 복지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경제적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공공적 서민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적어도 여성들이 사채 빚 때문에 성매매를 하게 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16) 파산관재인 제도는 “심리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것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가 파산신청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보다 파산신청을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어쨌든 파산제도는 금융채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파산신청을 더 어렵게 만들어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파산신청을 심리해야 할 법원의 역할을 왜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구나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신청자에게 부담시키면서까지 말이다.

3) 성매매 여성들의 빛이 지속되는 구조의 해체

사회적 편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은 ‘고소득업자’로 취급되는데 왜 여성들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성매매 여성들의 빛이 지속되는 구조가 해체될 수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성매매 구조에서 전혀 문제제기 되지 않고 있는 ‘노동조건’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들의 급여가 모두 빛 변제에 사용되고 있어 불안정한 생활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업소에서 지출되는 경비까지도 여성들에게 물리도록 하고 있는 관행, 애초에 지급되는 선불금은 급여의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물리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취업할 때 업주들은 차용증을 쓰게 하기에 급급하지, 피고용주가 알아야 할 ‘노동조건’에 대한 어떤 사항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 월급(급여)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하루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 세금납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그리고 나서 여성이 일을 시작하면, 자기 업소의 규칙이라면서 알려주는 것이 결근비 및 지각비, 때론 출근비라는 명목의 어떤 비용을 내라고 하거나 처음의 조건과 다른 내용의 조건들을 하나씩 추가한다. 때론 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까지 여성의 빛으로 올리는 것도 여전하다. 고용된 여성도 전혀 모르는 세금납부라든가 의료보험 납부가 진행되며, 여성의 최소 필요 경비로서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여성들이 일할 때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들, 즉 미용, 의류, 화장품 비용은 왜 업소의 경비로 충당되지 않고 여성들이 직접 충당해야 하는지, 선불금을 갚는다 하더라도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을 왜 보장해주지 않는지, 손님 1인당 x:y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얼마나 공정하거나 또는 정당한지에 대해 아무도 따지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들의 빛이 지속되는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먼저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 보고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상담사례들을 전체 사채시장의 구조의 변화와 함께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작성되었다. 사채 시장은 전통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내어왔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온갖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채시장의 규모는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창되었고, 그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삶에도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업주들 보다는 사채업자들이 성매매 여성들과 더 긴밀하게 관계를 하기 시작했고, ‘합법’ 적 경로로 여성들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 심지어 이 ‘합법이라는 탈’ 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업체, 상호저축은행까지 성매매에 공모하는 형국을 만들었는데, 그에 반해 성매매 여성들의 착취피해는 그저 ‘개인의 빚 문제’ 로만 치부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비가시화된 성매매 여성들의 사채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사채시장의 팽창 정책, 채권자 중심의 금융정책, 약탈적 대출을 방조하는 정책의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들의 채권채무관계의 다변화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성매매 여성들이 다변화된 채권채무관계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 상에 명시된 불법채권무효 조항의 유효성을 적용시키는 것 외에도 팽배해진 사채업자들의 불법, 탈법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필수적이다. 또 사채계약에 있어서 성매매 여성의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첫째는 채권자 중심의 금융정책을 뒤집는 것, 둘째는 대안적인 서민금융의 폭을 확장시켜 성매매 유입시기인 2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복지와 저리의 대출상품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는 빚을 누적시키고 지속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성매매 구조 안에서의 노동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시된 논의는 매우 제한적 틀에서 사고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며, 이후 사채시장을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수정 정책이 필요한지, 또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주도권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막달레나의집(2004),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2010년-2011년 상담사례
- 송태경(2011), 『대출천국의 비밀-내 빚더미에 감춰진 진실』, 개마고원
- 유주선(2011), 「약탈적 대출행위, 이른바 유럽에서 ‘책임대출과 책임차입’ -
 유럽연합의 논의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Vol 36. No 0.
 p.647-679.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1), 『성매매피해 통합지원 매뉴얼』, p.234-237
- 홍종학(2005), 「약탈적 대출에 관한 소고」, 한국경제학보 제12권 제1호.

【보도자료】

- “고리대출 ‘뒤틀’ 놓는 성형외과-사금융업체 연계 성형 권유…브로커 ‘온라인
 알선’ 활개”, 문화일보 사회, 2008.1.24일자
- “예뻐지고 싶은 욕망노린 성형수술 불법사채 등장”, 경인방송, 2012.4.26
- “이자 5214%의 비밀... 인천에서도 불법 대부업자 활개”, 헤럴드경제,
 2012.4.27
- “ ‘사채’ 원금의 70배 갈취에 성매매 강요”, KBS, 2012.4.20
- “사채빚 못 갚자 캐나다 데려가 성매매”, 연합뉴스, 2011.5.25
- “불법사채에 내몰린 사람들, 그들의 선택은?-금융위기 거치면서 금융기관 문
 좁아져... 고금리 대부업 늘어”, 시사포커스, 2011.6.11
- “유흥업소 종사자만 가입 가능한 ‘나가요카드’ 의 함정”, 스포츠조선,
 2007.6.15
- “신용회복이 ‘도덕적 해이’ 를 조장?- ‘우상승배자’ 들에게 전하는 ‘시장
 님’ 의 진실”, 프레시안, 2008.2.18
- “사채 뒤틀에 걸린 딸 술집 나가자... 아버지, 딸 살해후 자살”, 조선일보,
 2012.4.18

【참고사이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부록】 별별신문 5호, “사채업자와의 분쟁,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

별별신문 5호, “사채업자와의 분쟁,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

꼭 기억해두세요!

하나,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 갚을 때까지 모든 증거와 기록을 남겨두세요!

둘, 보증인 서약, 대리변제, 공증, 빚 돌려막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셋, 빚 때문에 연락을 끊지 마세요!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나 무료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잠적”은 오히려 문제만 더 키웁니다.

○ 돈을 빌릴 때

1.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자! 등록·무등록 대부업 여부, 법정 이자율을 지키고 있는지, 돈을 빌리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문서 기록 등을 챙기자.
2. 백지차용증을 쓰지 말자. 대부분 채권자 정보를 안 쓰고, 여성들만 사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따지를 걸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그 상황을 녹음해두어서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남겨놓자.
3. 돈은 되도록 계좌입금을 통해 갚도록 해서 기록이 남게 하고, 현금으로 갚아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 유흥업소를 그만두고 뜬금없이 빚변제 독촉이 들어올 때:

1. 채권채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차용증, 대부계약서, 채무확인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자.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 요구를 무시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업소와 관련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될 때,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도움을 받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한다.
3. 일반 채권일 때, 빚 상환내역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은행 거래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거래의 경우 사채업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 법적으로 이자율 제한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1. 무등록 대부업은 연이율 30%, 등록 대부업은 연이율 39%를 초과할 수 없다.
2. 금융감독원 일수계산기로 정확한 이자를 계산하라.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했을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채업자가 협박하거나 집으로 찾아올 때:

1.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사항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채무 사실을 가족 등 제 3자에게 알리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방문하는 행위, 빗독촉 하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송태경, 2011, 『대출천국의 비밀』 부록〉

【토론 1】

대부업 관련 제도개선 핵심 요구 사항¹⁷⁾

송태경(최재천 의원 보좌관,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

1. 법령 최고이자율을 연25% 이하로 즉시 인하하라!

① 개정대상: 대부업법(금융위 소관법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법무부 소관 법령)

② 현재 관련 법안으로 김기준 의원의 126명(민주통합당안)이 발의한 법안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등록 대부업자, 금융기관: 연39% → 연30% 이하로 인하(목표: 연20%대 이하)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업자): 연20% 이하

※주: 법령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는 경우, 법령 최고이자율 위반과 관련된 이자수익 전체(이자+초과이자 수익)를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여 환수된 범죄수익은 초과지급금 반환 및 피해구제 용도로만 사용하는 방안 or 원리금 모두를 불법 원인급여 무효화 하는 방안 등 검토하여 별도 추진할 필요 있음)

2. 정부는 서울시와 15개 광역시도가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검사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라.

① 적정 검사인력 10개 업체당 1명, 최소 검사인력 50개 업체당 1명: 서울시의

17) 이 글은 참여연대, 에듀머니, 민생연대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되어 발족하는 제도개선 단체(가칭 “서민금융안정망 전국네트워크”)에 제출했던 안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2012.6.29. 수정 2012.7.9

경우 등록업체(2012. 4월말 기준 4,926개) 기준 최소 50명에서 500명의 전문 검사 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해야 하므로 이들 전문 검사 인력은 두 배 이상 필요할 수도 있음.

또한 서울시와 15개 광역시도가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검사 인력은 현재의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구조를 통해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이 있어야 함

②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지원실 대부업팀(총 9명)이 110개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를 담당(1인당 12.2개)” 하고 있으나, 금감원 역시 산발적 단속만 가능하고 일상적 관리감독 등은 못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2011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1)] 참조

3.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순자산액 1억 미만인 자의 등록 제한 등 대부업 등록 요건을 즉시 강화하라.

1)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대부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자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실을 반드시 보상하게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업법은 채무자가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초과이자(채권자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게는 하고 있으나(제8조 제4항), 더 이상의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그리고 이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고도, 대부업자의 지능적 수법 등(대부업자 본인 명의로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또는 이른바 “바지 사장” 을 내세우는 수법 등) 때문에 채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이런 현실적 사정 때문에 채무자들 대다수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음

그러므로 대부업자들의 약탈적 대출행위로부터 채무자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증보험 가입의무제도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것임

2) 순자산액 기준 신설

전문가조차 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 등을 구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대부업자들이 팽창 난립하고 있고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업자들의 팽창 난립을 억제하고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단순 서류조건과 고정사업장 요건 등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제도에서 대부업자들의 팽창 난립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법은 없음.

오히려 대부업 등록이 너무나 쉬운 현행 제도에서는 대부업자가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등록해서 영업하는 것이 유리(이 경우 미등록 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고, 연39%를 초과해야 처벌되며, 재수 없게 걸려도 연39%까지 보장)하므로, 가정집이나 식당 같은 곳에 전화기 한 대(또는 사실상 가정용이나 식당용 전화기 한 대) 놓고 등록 영업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갈아타며 합법의 포장을 쓰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것도 용이함.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하고, 금융거래과정(서민들의 피해는 바로 구체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임)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기본적인 점검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대부업자들의 팽창 난립 억제 및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등을 위해서도 등록 또는 등록 거부요건이 합리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일본의 입법례(일본: 순자산액 5000만엔 미만의 자는 대금업 등록을 할 수 없음) 등을 감안할 때, 순자산액 5억원(?) 미만인 자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방문 빚 독촉, 대리변제 강요하기 등을 즉시 금지하고, 빚 독촉에 대한 금융 소비자 방어권을 보장하라!

방문 빚 독촉, 대리변제 강요하기 등이 일상화되었고,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절실함

빚 독촉 문제에 대한 이전 법규(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서는 대부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었음.

그러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제정일 2009.2.6. 시행일 2009.8.7.)된 후부터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이 아닌 한, 한 두 번 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괴롭히는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서너 번 이상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벌조차 어렵게 되었음 또한 이전 법규에서는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도 그 자체로 불법이었고 처벌 대상이었으나, 금융소비자가 반복적으로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게 했음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대략 2006년에서 2008년 초 기간 동안 주춤했던 방문 빗 독촉과 대리변제 강요하기 등이 완전히 일상화된 현실임

그러므로 현재의 채권추심법에서 “반복적으로” 라는 독소조항은 시급히 삭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빗 독촉에 대한 금융소비자 방어권제도도 신속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5. 파산자를 두 번 죽이는 파산자 부담 관재인 제도는 즉각 폐지하라!

개인파산면책제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파산상태 빠진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4월 한 차례 큰 개선이 있었으나 이후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 후퇴 현상이 눈에 띄게 나기 시작함

특히 개인파산면책제도 신청자 일방의 비용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심사를 진행하게 하는 현행 개인파산 관재인 제도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임

비록 2012년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평균 200만원까지 받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30만원으로 낮추어 신청인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파산관재인의 역할을 통해 파산심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까지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개인파산면책절차를 밟고자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개선이라 말할 수 없음

오히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치이후 과거에는 예외적으로만 선임되던 파산관재인이 예외 없이 선임되어 신청자들에게 30만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림. 또한 개인파산 신청자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신청인의 사회적 경제적 재건을 신속히 돕겠다는 법원의 설명과는 달리, 법원에서는 현재 모든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 쓸데없이 파산신청 비용만 증

가시키고 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심사기준마저 엄격해져 파산상태에 빠진 개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의 도모에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 등으로 필요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신청자 일방에게 전담시키는 현행 파산자 부담 관재인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함.

즉, 꼭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개인파산면책 신청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이의를 신청하는 채권자들이 그 대부분의 비용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즉, “파산관재인 선임할 돈조차 없어서 파산면책 (신청) 못한다” 는 얘기가 나돌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개선이 절실함

6. 병원비, 생계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급하시면 제2금융권의 고리대 자금이나 대부업체의 악랄한 자금이라도 쓰시라” 는 정책태도를 즉각 폐지하고, 생활안정기금 조성 등 대체적인 자금공급원을 충분히 제공하라!

재산도 소득도 신용도 없는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거의 없음.

특히 지금과 같이 정부가 “급하시면 대부업 자금이라도~” 라는 정책기조가 지속되는 한, 가난한 서민들에게 은행문턱은 아무리 낮춰도 높은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약탈적 대출이 횡행하는 제2금융권에서 그리고 대부업체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됨.

그러므로 정부의 그릇된 정책태도는 신속히 수정될 필요가 있고, 또한 정부가 사회보장의 책무는 조세 재정 등의 문제로 당장 이행할 수 없어도 정부 차원에서 장기저리나 무이자로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하는 체계를 광범위하게 갖춰야 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예: 저소득층의 소액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등)가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추진되어야 함

단, 공급된 자금이 빚 돌려막기에 사용되지 않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특수카드 발급 방식의 대출 등 사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7. 기타 휴대전화 대출사기 문제, 대포차와 대포통장 문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는 공정증서의 문제, 신용회복제도 문제, 현행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개선문제(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 처벌의 실효성 문제, 소액채무조정제도 도입 문제, 개인연대보증 폐지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개인보증제도 폐지

○ 신용 보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성립돼 있기 때문에 기업 대출 영역에서의 특수한 예외(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영책임과 관련된 보증)를 제외하고, 개인 사이의 대출영역에서도 개인보증은 효력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중소 기업청이 소기업 대출 시 일부 연대 보증을 서는 등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과 가계 대출에서 개인보증은 없음

일본도 연대 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금융기관이 대출에서 무자격자나 자신의 신용을 초과해 무리하게 보증을 설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우리의 금융위원회도 연대 보증이 3쪽을 멸하는 제도라는 인식하에 개인사업자는 연대 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 사업자는 실제 경영자에게만 연대 보증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함. 단, 금융위원회의 방침은 은행권과 보험사에 한정된 방침이었고, 따라서 사회적 폐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 및 개인 사이의 대출에서 개인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침은 아니었음(KBS 취재파일 4321, “연대 보증 때문에...” , 2012.1.30. 참조)

【토론 2】

사채시장과 성매매 여성들의 금융적 구제활동 사이, 질문이 분리되어야 할 필요

김주희(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발제문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통렬하게 공감하고 여러 대안적 장치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함에도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비판적인 질문을 실험적으로 던지고자 한다.

사채업계에서 20여 년간 종사해온, 자신을 유일의 사채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는 오문영은 일수를 할 때 당사자(차용주)가 본인(차용인)에게 직접 다니며 수금을 해야 시일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파악된 신용 관계에서야 상황이 어려우면 당사자끼리 만나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사정도 할 수 있고 연기도 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은 오히려 하루만 늦어도 연체이자를 꼬박 물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규약에 어긋나면 가차 없이 조치해 버리는 냉혈기관(오문영, 1994: 251)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옷가게를 한다고 할 경우 매일매일 수금하러 들러 잠시 앉아 이런저런 얘기도 하며 시간을 갖다 보면 채무자가 장사가 잘 되는지, 장사수완이 좋은지, 혹 다른 빚쟁이는 없는지, 성격은 어떠한지 등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연후라야 일수금액을 높여 거래하든가, 신용이 좋지 않으면 거래를 끊든가 하는 것이다(오문영, 1994: 52)”

사채업자의 에세이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글쓴이가 성매매 현장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약탈적 대출이 과연 성매매 산업에 기생하고 있는 사채시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본주의에 내재된 문제인지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

용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과 유통의 모순에서 발생한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라고 볼 때 왜 하필 성매매 여성들과 관련된 사채시장의 문제를 “문제” 라고 지적할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이 성매매를 “알선”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인가? 사실 사채업자들의 “좋은 먹잇감” 이 되기 쉬운, 많은 현금이 오가는 곳은 성매매 업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약탈적 대출 역시 성매매 여성들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만약 인용 글에서 채무자가 옷가게가 아닌 성매매 업소에 있었다면 일수업자는 자연스레 장사가 잘 되는 가게로 “알선” 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위치가 좋은 옷가게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기관은 태생적으로 채무자의 수입 형태와 수입 규모를 중시한다. 사채시장과 “알선” 의 문제를 결합해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에서의 “알선” 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알선 없이 성매매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들은 알선자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또한 사채업자가, 때로 성매매 여성들이 “소통적” 이라고 말하는 나름의 금융 시장에 대해 어떤 입장에서 문제화할 것인지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100만원을 빌린 후, 하루에 1만원씩 120일간 총 120만원을 갚은 것” 은 사실 연 113.7%에 해당하는 이율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일수 거래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성실한 저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또 이러한 방식의 일상적 일수 거래는 동네에서 자신만의 ‘신용’ 을 쌓기 위한 신용 구축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일수업자를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으로 의미화하기도 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삶, 문화에 대한 존중 없이는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정교한 문제화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성형, 미용, 의류 구입 등 성매매를 위한 최적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를 위해 마련하는 돈을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비용” 의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의 삶과 문화를 피해의 프레임 안에 놓고, 성매매 현장 밖에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다” 고 전략적으로 번역할 것인가? 한편 성매매가 불법화된 현실에서 이러한 사채 문제를 합법/불법의 문제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일종의 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이들 여성들의 채무 변제를 도우려는 노력은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주요한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표정선의 글

에도 나타나듯이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는 이제 사채, 금융, 채권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성매매 관련 상담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업주를 신고하지 않는다. 이들의 빚이 업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에 업주가 선불금을 지급하던 위치에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채시장이 있다. 하지만 반성매매 운동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금융적 구제 활동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실천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탈성매매를 통해 해당 여성들이 어떤 주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빌린 돈의 이자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신경제 질서에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인물형이다. 현재 많은 성매매 지원 단체에서는 장애인인권단체나, 철거민 단체, 빈민 운동 단체와의 협업보다 법무사, 변호사, 경찰 혹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 협력이 일상적이다. 왜냐하면 성매매 여성 구조 지원 활동 자체가 이들의 채무를 해결하고 신용을 복원해서 건강한 사회인을 만들어내는 일로 상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조와 지원을 위한 예산이 이들의 금융적 갱생을 지원하는 법적 지원 체계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들을 지하경제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이들의 자립을 위한 토대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제 더 이상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성적 타락의 늪에서 구제하기 위해 탈성매매가 지향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 여성들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에 있는 피해자로 재현되면서 이들을 구조,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이전 시대 이들을 집단적으로 격리 수용하던 구제책에서 금융적 자율성, 창의성, 책임감을 추구하는 자기 경영적 인물형으로 개조하려는 국가 사회적 노력의 변화는 갱생이라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 이들이 더 이상 윤락여성 보호지도소에 감금되어 갱생되지는 않지만 경영자적인 자기 기획에서 시작되어 합리적인 재무적 실천의 궤도 위에 자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일지 모른다. 이러한 합리성에 동의할 것인가? 그렇다면 성매매에 연루된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운동 단체의 일상은 대안적 담론을 생산하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도 모른다. 이러한 여성 운동 단체의 금융 실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견인해 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통렬한 성찰 없이는 여성주의 정치학이 신자유주의 정치학과 결합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날을 세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룸 소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eloom2003@naver.com

02-953-6280

www.e-loom.org

이룸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

잔치잔치 열렸네

2012. 8. 19(일) 오후 3시 ~ 10시

누군가에겐 그루브 터지는 공연_ 7시
인도 직수입 향합과 인센스 스틱/아로마 염가 판매
대담할뎨 예, 썬! 서쉐프의 특선 메뉴_연어샐러드와 죽발냉채

홍대 클럽 제스

찾아오는 길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1-303800 (예금주명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이름 수익사업합니다. 도와주세요. ‘_’

아끼고 아끼면서 알뜰살뜰 산다해도 워낙에 없는 살림이다 보니 이름은 늘 보릿고개입니다. OTL;;

해마다 CMS후원과 여러 도움을 통해 간당간당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지만 올해에는 큰맘 먹고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수익사업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천연아카시아꿀(설탕은 1g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2.4kg 1병 **50,000원**(택배비 포함)

농협 301-0020-2497-61 예금주_반성매매인권행동이름

문의_ **02-962-6279** eloom2003@naver.com강통

양한마리,
두마리...백마리...
불면의 밤도 걱정 마세요.
피로회복과 심신안정으로
꿈나라로 직행합니다!
“꿀물은 과학입니다.”

눈물 짝 ㅠ 콧물 짝 ㅠ
감기엔 역시 꿀물 한 잔!
부은 목을 따뜻하게 다독여 주고
편안하게 해줘요.

바쁜 일상에 맘을 종종거린다면
공복감도 해소하고 기분전환을
시켜주는, 뉘면서 즐기는
꿀물 한잔의 여유를 느껴세요.

기분 좋은 한잔 술에
머리가 어질어질...
속은 뒤집히는 속취에
시달린다면!
마법의 꿀물 한잔으로
짱깨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흥삼,
커피, 차 등
어떤것과도
어울리는 꿀!
체온을 상승시키고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요.

**꿀, 이럴때
잡싸요!**

머리에서
증가하는
스트레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어떤 곳인가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활동, 성매매 현장의 다층적인 문제와 고민을 연구하고 이를 대중 캠페인, 자료발간, 포럼, 강의교육 등의 활동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상담, 긴급구조, 법률지원, 의료지원, 쉼터 연계, 심리상담 연계 등이며 성매매 현장의 권리 침해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성매매 현실을 바로 알리고 성매매 문화를 바꿔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룸의 발간물

성매매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보고서(2007)

성매매 백과사전, 인터넷에 끼어들기(2008)

성판매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2009)

청량리집결지 기록화 작업-불온한 확산, 끝나지 않은 천일야화(2010)

루머 종결자들 : 성매매를 말하는 서른 개의 목소리(2012)

-언니들을 위한 발간물

희망충전 100%를 위한 2%의 용기

희망충전 100%를 위한 2%의 지혜

유형업 종사자를 위한 '별별신문' 발행

이룸의 다양한 활동과 소식, 별별신문 전문은 이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e-loom.org	■ 이메일 eloom2003@naver.com
■ 주 소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232-12 5층	
■ 전 화 02-953-6280	■ 팩 스 02-953-6281